

직원채용과 급여에 관계된 필수 요건

갑근세 신고와 4대 보험

'사람의 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제과업의 경우 전체 경비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 직원 급여를 지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갑근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갑근세가 4대 보험 부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꺼리는 업주가 많다. 직원 급여와 관련한 세무 상식을 배워 직원 복지는 물론 세금 감면 혜택도 누리보자. 정리_정술이 기자·사진_이성우

1인 제과점을 제외한다면 모든 제과점은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불한다. 급여를 지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매월 '갑종근로소득세(일명 갑근세)'를 신고해야 한다. 갑근세는 근로를 제공해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간이세액조건표' 양식에 따라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9월 급여를 9월 30일에 지급한다면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원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 월 20만 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1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100만 원 이하 직원에 대한 추가근로수당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할 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급여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다음 해 2월 10일 연말정산에서 재정산된다. 갑근세 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4대 보험공단에 통보되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해 직원 복지는 물론 세금도 감면받도록 하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급여로 지출한 비용 모두 지출 경비로 처리하려면 갑근세 신고와 함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사업주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4대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재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징금을 내야 한다. 또 직원들의 복지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면 월 급여액의 15% 정도를 납부한다. 그 중에서도 급여액의 9%(사업자와 근로자 각 4.5%씩 부담)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은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룬다면 4대 보험공단에서 과거 3년분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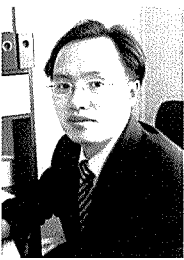
급추징하고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즉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단,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 계약직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보험 부담 비율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1.815%	4.5%	0.9%	사업주 부담
근로자	1.815%	4.5%	0.5%	-

직원 채용 시 근로조건 문서화할 것

요즘 사업자들은 누적 퇴직금제보다는 연봉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때때로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연봉제에서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돼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직원을 채용할 때 구두로 연봉제를 상호 합의했다고 해도 연봉제계약서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퇴직금을 두 번 지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노동부 발표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이직율이 높은 제과업의 경우 연봉제로 직원을 채용할 때 법정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후후에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Advice 정동현

<정동현세무사사무소>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 현재 부동산중개업협회지 <전국부동산뉴스>와 차과정보지 <텐포라인>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